

 국토교통부	보도설명자료	
	배포일시	2019. 12. 3.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 ·과장 박정수, 사무관 박정규, 주무관 권영일 ·☎ (044) 201-3542, 3543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지난 7월 마련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KBS · MBC, 12.2.(월) >

- ◆ 예견된 인재? ... '사고 위험' 타워크레인 막을 제도 없어
- ◆ '추락사고...이번에도 '무인' 타워크레인

-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논의된 「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 - (등록 심사)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대상으로 서류 위주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전 안전성 확인 및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데 미흡했었고, 이에,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여 판매 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, 허위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,
 -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형식승인 시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, 수입 과정에서 조종석의 탈거(脫去) 등과 같은 당초 제작규격 및 성능의 임의변경을 금지합니다.
 - (안전 장치)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, 장비결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, 영상장치,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.

- (소형 면허) 소형 조종사 면허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, 앞으로는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기 시험을 추가하고,
 - 또한, 현장에 있는 교육이수자들이 교대로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을 무분별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토록 하고 운전시간 등을 기록·관리할 계획입니다.
- 다만,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잠정적으로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에 대해 조종사 노조, 임대사업자 등 이견으로 지난 10월말까지 노사민정 협의체를 운영하여 최종 합의(10.30)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- 이에 따라 합의를 위해 미루어졌던 소형 규격 기준안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건설산업과 박정규 사무관(☎ 044-201-3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